

1. 개정(제정) 이유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 마련,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별지로 마련 및 인용법령 명칭 변경 사항 등 시행규칙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안 제62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안 제13호의 5 서식)

- 그간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별도 양식은 없어 이를 보완

다. 인용법령 명칭 현행화(수질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시행규칙 별표 3)

라. 농지전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변경(시행규칙 별지 서식 55, 5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운영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한다.

별표 3 제50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제57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납부안내

납부안내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지로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납부(BC, KB카드사 등 인터넷지로 가입카드사 가능)	
③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 이용방법	
사이트 접속 후 일반지로요금 선택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일반지로요금 → 지로번호 입력 (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버튼(한국농어촌공사) → 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 금액 입력, 체크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기타 납부자 정보·연월차는 입력 생략 → 이체할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를

납부안내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https://njy.mafra.go.kr/)	
③ 인터넷지로 납부	
 (https://www.giro.or.kr)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뒷면 참조	

”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뒤쪽) 안내에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 :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

※ 본인확인 방법 : 공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 인터넷 지로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로번호 입력(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한국농어촌공사) → 납부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금액, 체크번호, 휴대폰번호 → 계좌이체

별지 제13호의5서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임대차할 부분		면적	m ²

[부대물건의 표시]

과수	그루	설비/시설	농막
----	----	-------	----

[계약내용]

연간 임차료		임차료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	▫ 현금 금 _____원정 ▫ 현물
-----------	--	------------	--	-------------	------------------------

-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지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년으로 한다.
- 제3조(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제4조(임대차 농지의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 제5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제7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번호	
임차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번호	
중개인	사업장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별지 제55호서식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로 하고, 다음 유의사항을 추가한다.

유의사항

※ 농지법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 제57호서식의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여부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③ (생 략)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 <u>물환경보전법</u>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③ (생 략)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운영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u>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 산업 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 7. (생 략)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 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 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9. ~ 49. (생 략)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품, 귀금속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51. ~ 56. (생 략)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 (생 략)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생 략)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 산업 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 7. (생 략)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 시설	2200 7491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 -----
9. ~ 49. (생 략)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
51. ~ 56. (생 략)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 (현행과 같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 ----- ----- ----- ----- -- - (현행과 같음)

【별지 34호 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납부안내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지로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납부(BC, KB카드 사용 인터넷지로 가입카드사가능) ③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 이용방법 사이트 접속 후 일반지로요금 선택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일반지로요금 → 지로 번호 입력(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버튼(한국 농어촌공사) → 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 금액 입력, 체크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기타 납 부자 정보·연월차는 입력 생략 → 이체할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고지서 뒤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납부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 납부 (https://njj.mafra.go.kr/) ③ 인터넷지로 납부 (https://www.giro.or.kr) ④ (현행과 같음) 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뒷면 참조

(고지서 뒤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 : 농

바랍니다.

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

※ 본인확인 방법 : 공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 인터넷 지로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로번호 입력
(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한국농어촌공사) → 납부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금액, 체크번호, 휴대폰번호 → 계좌이체

○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임대차할 부분		면적	m ²	

[부대물건의 표시]

과수	그루	설비/시설	농막	
----	----	-------	----	--

[계약내용]

연간 임차료		임차료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	▣ 현금 금 _____ 원정 ▣ 현물
--------	--	---------	--	----------	-------------------------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지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년____월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년____월____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4조(임대차 농지의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중개인	사업장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 · 인가 등 신청일자							
허가 · 신고 협의번호					허가 · 신고 협의일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 신청내역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용도(목적)						
	사유						
	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m²]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허가 · 인가 등 신청일자						
허가 · 신고 협의번호		허가 · 신고 협의일자				
용도변경 신청내역	농지소재지	번지외필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용도(목적)					
	사유					
	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물환경보전법」별표 13 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

유의사항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해당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인가 등 신청일자			
허가·신고 협의번호		허가·신고 협의 일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여부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용도변경 승인내역	농지소재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 진흥지역밖						
	계						
	용 도 (목 적)						

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승인조건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인가 등 신청일자			
허가·신고 협의번호		허가·신고 협의 일자	

용도변경 승인내역	농지소재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용 도 (목 적)							

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승인조건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